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종합감사 -

2023. 하반기.



□ 처분요구일람표

1.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	(통보)	3
2.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주의)	10
3.	법인 신용카드 등 구매카드 관리 부적정	(시정)	13
4.	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시정)	15
5.	언론광고 홍보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8
6.	정수기 설치 신고 행정절차 미 이행	(시정)	21
7.	물품관리 업무 부적정	(주의)	23
8.	행사·홍보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25
9.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8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하 “의료원”)에서는 자체 「복무규정」 제22조에 따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일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추석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국경일, 설날 등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를 운영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법령에서 정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공휴일 외에 이와 유사한 유급휴일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의료원에서는 「복무규정」에 ‘개원 기념일’이 유급휴일로 제정¹⁾되어

1) 복무규정 제정일 1982.7.1.

있는 것을 정부 지침에 따라 개정치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0000년 제00차 정기 000000 안건으로 “개원기념일(5/15) 유급휴일 휴무사항 결정”을 부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 개원기념일에 대해 보상휴가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23년 개원기념일을 보상휴일로 사용한 소속직원에게 통상일급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장은

개원기념일을 「근로기준법」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의 규정과 맞지 않게 유급휴일로 정한 「복무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여 보수를 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계약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연 2회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에 참관해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참관 하에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에서는 감사대상기간인 0000. 00월부터 0000. 00월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검사 대상 시설공사 00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하자 발생 여부의 확인도 할 수 없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사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등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법인 신용카드 등 구매카드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포항의료원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대상에 한해 신용카드 등 구매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료원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회계규정」 제10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따르면 직원은 관계법령과 병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등 발급 및 관리요령에 따르면 기관은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의료원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00개 법인 신용카드에 대하여 발급일자,

발급매수, 금융기관(통장번호), 카드번호(비밀번호), 보관책임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입금되면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포항의료원에서는 사용 중인 신용카드에 대해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고, 0000년 00월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총 적립된 0,000,000포인트(0,000,000원)를 세입조치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② 세입조치 되지 않은 카드 포인트 0,000,000점(0,000,000원)을 세입 조치하시고, 카드발급 시 발급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범죄 경력 조회 미 실시
소 관 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포항의료원은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 직지침」 등에 따라 직원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총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노인관련기관인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17 제5항에 따르면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항에 따르면,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르면, 노인 관련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조회하려면, 노인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인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장애인 관련기관의 운영자는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르면,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 경력을 조회하려면, 장애인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으로서 노인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인 포항의료원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의 경력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포항의료원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조가 시행된 2016년 12월 이후로 감사일 현재까지 000명의 직원 신규채용을 추진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조가 시행된 2021년 6월 이후로 감사일 현재까지 00명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신규채용을 추진하면서 취업자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및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② 노인, 장애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언론광고 홍보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포항의료원에서는 병원 전반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신문 및 방송광고를 하고 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약칭: 정부광고법)」 제5조에 의하면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정의) 제3호에는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제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는 “홍보매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로서 이와 유사한 국내외의 매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의료원은 「정부광고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요청하여 광고를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포항의료원에서는 0000년부터 0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신문 및 방송 광고 00건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요청하지 않고, 언론사 등에 홍보비 00,000천원을 직접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정수기 설치신고 행정절차 미이행
소 관 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포항의료원은 의료원 내에 정수기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먹는 물을 제공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제1항에 따르면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제2항에 따르면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 대수는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르면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또는 변경설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정의) 제1항 제7의2호에 따르면 “정수기 설치·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법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의료원에서는 추가로 설치되는 정수기에 대해서는 설치 장소 및 설치 대수를 포항시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포항의료원에서는 0000년 00대의 정수기에 대한 설치 신고를 한 이후 감사일 현재 총 00대의 정수기를 설치·관리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설치된 정수기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② 의료원 내 미신고된 정수기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관리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회계규정」에 따라 자산의 취득, 사용, 보관, 처분,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의료원 「회계규정」 제113조에 따르면 자산관리담당자는 연도말 현재의 자산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여 과부족 및 망실, 훼손, 성능저하 등 변동상황에 대한 관리 보고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33조에 따르면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 순으로 기장 정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매년 현재의 자산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자산별 대장을 정리하는 등 정기적으로 물품에 대한 운용상태, 변동여부를 관리하는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의료원에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재물조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수립하지 않았고, 재물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의료원 물품의 실물불일치, 훼손·망실 등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장은

앞으로는 의료원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물품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행사·홍보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료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집행을 위한 행사비 예산을 ○○○에서 편성하고, 부서별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022·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Ⅱ.주요항목별 집행지침
②경비 나. 세부집행요령 9)행사·홍보비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2. 일반운영비 2-3 행사운영비에 따르면 행사비 예산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강사료,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등에 집행하며, 기관 또는 부서단위의 체육행사, 기관의 연찬회(워크숍) 경비로는 집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기관 또는 부서단위의 체육행사, 워크숍 경비를 행사비²⁾로 편성 및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행사비 예산을 사용목적 및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를

2) 체육대회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는 정원가산업무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목·세목을 신설하여 예산 사용목적에 맞는 과목으로 재편성해야 됨

소홀히 하여 기관 워크숍, 등반대회에 편성하였고, 행사비를 부적절하게 지출하였다. 특히 0000년도에는 직원 워크숍에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00,000천원을 따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비 예산으로 노사화합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의 필수 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00~’00년까지 ○○○○○○
◇◇◇◇◇ ◆◆◆◆◆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6절(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1.적용대상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4)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특정인³⁾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1항 제5호 라.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체결 하는 경우’ 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3)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특정인은 학술연구의 차별성·특수성 등으로 인해 당해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 뿐인 경우에 그 자를 의미함(기획재정부 ○○○○○-000, 0000.00.00.)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법률 등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열거된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조사 기관 담당자들에게 유선상으로 연구용역이 진행 가능한지 문의하여 ☆☆☆☆에 유일하게 ○○○○과가 있는 4년제 대학인 ◇◇◇◇만이 용역수행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사유와 해당용역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사유로 '00~'00년(감사일 현재)까지 00년 동안 00건, 00백만원의 용역계약을 ◇◇◇◇와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은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